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14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김용민 · 김동아 · 김의겸
서영교 · 박지원 · 김한규
김남희 · 이성윤 · 박균택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수사과정에서”를 “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에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할”을 “검사 및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라 한다) 또는 조사를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을 “법원, 검사”로, “재판이나 수사”를 “재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수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이나 조사”를 “신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때에는”을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수사에”를 “수사 및 처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을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사하는”을 “수사(검사가 송

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조사할”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와 보호) ① (생략)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와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에서-----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생략) ② 수사기관은 신고자들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 및 수사기관은 신고자들에게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라 한다) 또는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미성
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
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
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
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
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
효) ① (생 략)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
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
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
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

조사를 할 -----.

③ 법원, 검사 -----

----- 재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수사-----

-----.

④ -----
----- 신문, 사실관계 확인
이나 면담 또는 조사-----

-----.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
효) ① (현행과 같음)

② -----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
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인·강요 수단이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에
는 -----

----- 수사 및
처분에 -----.

③ -----
----- 성
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할 --

-----.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 -----

----- 수사(검
사가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
한다)하는 -----

----- 검사
및 수사기관-----

-----.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u>수사기관</u>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u>조사할</u>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검사 및 수사기관</u>----- ----- <u>사실관계 확인이나</u> <u>면담 또는 조사를 할</u> ----- ----- -----. ⑤ (현행과 같음)
---	---